

해외출장 결과보고

2009년 7월 2일 ~ 4일까지의
일본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자: 황 윤 재 부연구위원(농식품정책연구본부)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 실태 파악
2. 출장목적: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식품안전관리제도 파악
3. 출장기간: 2009년 7월 2일~4일 (2박 3일)
4. 출장지역: 일본 도쿄

5. 출장자

부서명	직급	성명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 윤 재

6.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일자	이동상황	방문기관
7월 2일(목)	서울(김포) 출발 →하네다 공항 도착	-
7월 3일(금)	동경	농림수산성 표시규격과
		도쿄도청 복지보건국
7월 4일(토)	하네다 공항→ 서울(김포)	-

7. 주요 면담자 및 연락처

면담자 성명	소속 기관 및 연락처
오사지마 카즈히로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과장 보좌 kazuhiko_osajima@nm.maff.go.jp
노리히사 나카무라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식품감시과장 Norihisa_Nakamura@member.metro.tokyo.jp
나오미 하라구치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식품감시과장보좌 Naomi_Haraguchi@member.metro.tokyo.jp

II. 주요 출장 결과

1. 일본의 식품표시 제도

■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적용 기준

- 일본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의무표시대상품목의 선정기준
 - ① 원산지에서 비롯된 원료의 품질차이가, 가공식품으로서의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품목 가운데,
 - ② 제품의 원재료 가운데, 단일의 농축수산물의 중량비율이 50%이상인 상품인 것을 요건으로 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선식품에 가깝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20개의 가공식품군이 의무표시대상품목으로 포함되었다.
 - 이러한 가공식품의 원재료 가운데, 중량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주된 원재료)는 그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 2007년 10월에는 녹차와 낙화생이 가공식품 의무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의무대상품목의 추가에 있어서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제안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표시의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이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에서의 공개히어링(hearing), 공공여론(public comment)을 활용함으로써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최근 이슈

-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슈로서 제기되고 있다.

- 첫째 빈번한 원재료 산지의 변화에 대한 대응, 둘째 물리적 공간의 제약, 셋째 원료 원산지 정보를 모르는 수입 중간 가공품에 대한 대응 등이다.

-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① 수입선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산지를 열거하는 가능성 표시, ② 「국산」·「외국산」 또는 「수입」이라고 표시하는 포괄표시 및 ③ 수입 중간 가공품의 원산국 표시방법 도입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중에서 가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빈번히 원재료의 산지의 변환을 하는 가공 식품에도 대응할 수 있고 사업자가 봐도, 포장재의 손실이나 표시 확인에 드는 비용 문제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가 마치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되게 되므로 상품의 내용과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줄 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 포괄표시는 자주 원재료의 산지가 변하는 가공 식품에도 대응할 수 있고, 수입 중간 가공품의 원산국표시는 원료 원산지 정보가 불명한 경우에서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제약된 공간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정한 대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며, 포장재의 손실이나 표시 확인의 비용문제가 작은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으로서 이러한 표시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또한, 수입 중간 가공품의 원산국 표시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원료 원산지의 기본적인 표시 방법

- 주된 원재료가 국산품이면 「국산」, 수입품에 있어서는 「원산국명」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절단한 무말랭이의 경우, 주된 원재료인 「무」의 원산지를 국명으로 표시한다.
- 다만, 주된 원재료가 국산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 ① 주된 원재료가 농산물의 경우, 국산인 취지에 대신해 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 ② 주된 원재료가 축산물의 경우, 국산인 취지에 대신해 주된 사육지가 속하는 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 ③ 주된 원재료가 수산물의 경우, 국산인 취지에 대신해 생산(채취 및 채포)한 수역의 명칭(이하 「수역명」이라고 하는, 양륙한 항명, 양륙한 항구 또는 주된 양식장)이 속하는 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 덧붙여 주된 원재료가 수입된 수산물의 경우는, 원산 국명에 수역명을 병기 할 수가 있다.
- 주된 원재료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어 「주된 원재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료 원산지명과 관련하여 표시된 산지가 어느 원재료의 산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주된 원재료인 무와 소량의 당근이 사용된 건조 야채 등의 경우에는, 주된 원재료인 무의 원산지에 대해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원재료명인 무의 뒤에 괄호 쓰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던지, 원료 원산지명란에 「A국(무)」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된 원재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복수의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에, 원료 원산지명란에 지명만을 표시하는 것은, 어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 일괄 표시 외에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주된 원재료의 조달처가 빈번하게 변동하는 등 용기포장에 미리 인쇄해놓음으로써 표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기한처럼 이 양식의 원료 원산지명의 란에 기재장소를 표시하고 일괄 표시란 외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기재 장소에 대해서는, 「범위 밖 기재」, 「별도기재」 등은 안되고, 「상품명 하부에 기재」 등과 같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인쇄글자 또는 쉼(seal) 등으로 대응하는 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복수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 주된 원재료에 대해, 2개국 이상의 것을 혼합했을 경우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산국명을 기재한다.
- 주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3개소 이상이 있는 경우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많은 것부터 순서에 따라, 2개소 이상을 기재해, 그 외의 원산지를 「그 외」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
- 국산의 원재료와 외국산의 원재료를 혼합했을 경우는, 국가 수준으로 계산하여, 3개국 이상의 것을 혼합했을 경우에 「그 외」라고 기재할 수 있다.

■ 정보제공 방법

○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예를 들면 1. 식품의 용기·포장에 ① 의무표시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주로 일괄(一括)표시내에서의 대응)하거나 ② 특색 있는 원재료(강조 표시)로서 표시 (주로 일괄(一括)표시외에서의 대응)하고
- 2.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 3. 2 차원 코드 (QR 코드) 또는
- 4. 매장에서의 POP 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련 현황

-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2003년 5월 제정되었다.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조직 개편 등이 있었다.
- 2003년에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은 식품보건부를 식품안전부로 재편하고 농림수산성은 소비안전국을 설치하였다.
-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소관법률인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비료단속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이 정비되었다.
- 최근에는 소비자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설치계획에 따라 ‘소비자청(가칭)’설치를 추진하면서 식품관련법령의 일괄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일본의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담당하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6개의 전문조사회를 두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 등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식품안전관련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험평가와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면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등 관련행정기관은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 일본의 농림수산성의 행정에 의한 감시지도 체계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성지방농정사무소 (農林水産省地方農政事務所)등과 도도부현 (都道府県), (독)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 의한 감시·지도와 「식품표시감시자」 등 같은 소비자의 협력을 얻는 감시에 의해 식품 표시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에 의한 감시·지도
 - 농림수산성에서는 전국의 지방농정사무소등에 전임(專任)의 직원을 배치해, 소매점포 등에 대한 감시·지도를 항상 실시한다.
 -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도도부현내의 업자에 대한 감시·지도를 실시한다.
 -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서는 가공식품의 성분 분석이나 신선식품의 DNA 분석등 과학적 수법을 활용한 표시의 감시를 실시한다.
- 소비자에 의한 감시
 - 식품표시 110번
 - 농림수산성은 국민으로부터 식품표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핫라인을 전국 65개소의 농림수산관계기관에 설치하였으며, 각 도도부현에도와 같은 창구 (窓口)를 설치하였다.
 - 식품표시전문가

- 소비자가 일상의 쇼핑을 통해서 식품표시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를 2008년도에는 전국에 5, 000명을 위촉하였다.

3. 도쿄도의 식품안전관련 현황

■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 도쿄도는 2003년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계획은 2005년에 수립하였다. “도쿄도 식품안전조례”는 식품 안전의 확보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도민의 건강 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가 달성해야 할 기본 책무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국가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도쿄도는 2005년 식품안전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시책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식품안전조례에 기초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2005-2009년)을 수립하였다. 식품안전추진계획은 도쿄도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확보방안을 망라하며,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 도민, 사업자, 관계 기관 등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 추진계획은 "사업자 책임을 기초로 하는 안전 확보", "과학적 견해에 근거한 안전" 과 "도, 사업자, 도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따른 안전 확보" 등 식품 안전 조례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① 식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시책, ② 도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③ 다양한 과제에 대응한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식품안전추진계획에서는 시책의 종합적인 체계, 중점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계획과 함께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도청 식품안전관리 부서

- 도쿄도의 식품안전관리는 복지보건국, 산업노동국, 환경국, 중앙도매시장, 생활문화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 이중 복지보건국은 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업자의 감시 및 지도, 식품 안전성 조사, 정보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국 소속 건강안전부의 건강안전과와 식품감시과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산업노동국은 생산단계에서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중앙도매시장은 시장내 사업자에 대한 식품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환경국은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배출억제, 이밖에 생활문화국은 소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도쿄도는 식품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6월 복지보건국 건강안전실장으로 의장으로 하는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를 설치하였다.
 - 회의는 복지보건국, 생활문화국, 환경국, 산업노동국, 중앙도매시장 등 5개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나 각 기관의 상호 제휴에 관한 사항 또는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 교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한다.
 - 또한 각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간사회를 마련하여 식품 안전확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협의한다. 이밖에 보다 폭넓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가 참가하는 부회를 설치하기도 하며,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연락회의를 개최한다.

■ 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안전행정에 있어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크며 이들은 수의학, 약학, 농예화학, 축산학, 수산학, 의학, 치의학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중에서 지사가 임명한다.

-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쿄도에 272명, 특별구 376명, 하치오지시 17명 등 총 665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
-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관련업체, 외식점, 수입자 등의 감시·지도, 식품등의 임의검사, 음식점이나 식품 공장등의 영업허가, 식중독이나 위반 사항 발생시 원인조사와 확대방지, 도민으로부터의 문의나 상담에 대응, 식품 위생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식품안전심의회와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 식품안전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관련 정보 수집·평가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돕기 위해 도쿄도 식품안전심의회와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식품안전심의회는 도쿄도의 독자적인 제도로 식품안전조례에 근거하여 도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하는 도지사 부속 기관이다.
 - 식품안전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식품안전확보에 관한 기본 사항들에 대해 조사 심의한다.
 - 심의회는 도민, 식품의 생산·유통·수입·판매와 관련된 사업자, 학식 경험자 전문가 등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기 2년의 25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도쿄도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는 식품 등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식품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치되었다.
 - 위원회는 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권고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 에 관련되는 수도·도민·사업자 상호간의 정보의 공유화 및 의견 교류 방법 등에 관여한다.

- 위원회는 임기 2년의 도민 및 학식 경험자 등 20명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된다.

■ 기타 식품안전관련기관

- 이밖에 식품안전관련기관으로 건강안전연구센터와 시장위생검사소, 축산위생검사소, 보건소 등이 있다.
 - 건강안전연구센터는 감시업무와 검사·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감시업무의 일환으로 유통식품의 감시검사, 대규모식품제조시설의 감시검사, 도매시장내 감시검사 등을 수행한다.
 - 시장위생검사소는 도매시장내 식품의 안전확보 기능을 담당하며, 식육위생검사소는 도축검사 등 식육의 안전확보 기능을 담당한다. 이밖에 도교도 보건소는 식품관계영업시설의 허가와 영업시설의 감시·지도 등을 담당한다.